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2014. 7. 28.

국가인권위원회

목 차

[1] 서문 1

[2] 제4조 일반의무 4

1.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4

2. 장애등급제 4

[3] 제6조 장애여성 6

1. 장애여성 교육 6

2. 장애여성 모성권 및 폭력으로 부터 보호 7

[4] 제8조 인식제고 9

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9

[5] 제9조 접근성 11

1. 시설물 접근성 11

[6] 제11조 위기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비상사태 13

1. 위기상황 발생 시 장애인에 대한 안전보장 13

[7]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15

1. 성년후견제 15

[8]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6

1. 정신장애인 입원 및 인권실태 16

[9]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참여 18

1.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18

2. 장애인의 탈시설화 19

목 차

[10]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 21

1.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 21

[11] 제21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 ····· 23

1.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 23

2. 청각장애인의 수화 언어 ····· 24

[12] 제24조 교육 ····· 26

1.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제공 ····· 26

[13] 제25조 건강 ····· 28

1.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 ····· 28

2. 장애인의 보험가입 ····· 28

[14] 제27조 노동과 고용 ····· 30

1.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 30

2. 고용 상 장애인 차별 ····· 31

[15]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 33

1. 부양의무자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33

[16] 제29조 정치 및 공적생활 참여 ····· 35

1. 장애인의 참정권 ····· 35

2. 장애인시설에서의 거소투표 ····· 36

[17]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 38

1. 장애인 인권실태 통계 ····· 38

[18]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 39

1. 협약 모니터링 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 39

[1] 서문

□ 국가인권위원회 소개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1. 11. 25.「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관이다.

○ 위원회는 장애차별 관련 개인 및 집단의 진정사항 조사 및 구제,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항의 조사 및 구제, 장애차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장애인 인권상황관련 실태조사 및 직권·방문조사 등 업무수행을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국내적 이행을 증진, 보호, 감독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구로서의 지위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최근 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의 의족이 업무 중 파손되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족은 생물학적 신체가 아니므로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장애인 차별이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표명하였으며, 2014년 7월 대법원은 의족을 신체의 일부인 다리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 국가보고서에 대한 평가

○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을 2008년 4월 시행하는 등 협약의 국내 발효(2009. 1. 10.) 이전부터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정부는 협약 제35조 제1항에 의거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 2011년 6월 유엔에 제출하였다.

○ 정부가 국가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 법제와 판결례, 정책·제도 등의 현황과 효과를 협약 각 조항별로 확인하고, 향후 협약에 부합하는 장애인 정책을 수립·발전시킬 수 있는 큰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국가보고서의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 특히, 협약의 국내 발효 이후에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여러 법률이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그 예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법」(2010. 7. 1. 시행),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0. 5. 시행), 장애아동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2. 8. 5. 시행),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2. 8. 23. 시행) 등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가장 최근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1. 21. 시행)도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사항 등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고서는 첫째, 여러 부분에서 국내 법제를 단편적으로 나열하거나 이미 제시된 법률조항을 중복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법률 집행이나 관행상의 문제로 협약 이행을 지체시키는 장해요소에 대한 기술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임의규정이거나 선언적 의미만을 갖는 법률 조항을 협약 이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설명한 부분도 있어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 상황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국가보고서 작성의 주요 목적은 현행 국내 법제와 협약의 부합 정도를 검토하고, 협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부족한 점을 확인하여 향후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보고서에는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긍정적 내용뿐만 아니라 이행상의 문제점과 한계도 가감 없이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둘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통해 협약의 각 조항별로 당사국의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보고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기술하거나 누락한 부분이 있다.

○ 셋째, 가이드라인은 협약 각 조항별로 의무이행 상황과 장애인 권리실현 현황을 비교·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보고서 중 장애인의 교육, 노동, 고용 등에 관련된 통계자료를 누락

하거나, 정부중심의 전체 공급현황이나 규모만을 단순 제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인권현황 실태분석에 필요한 기초통계 제공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 넷째, 국가보고서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 유형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와 인권현황을 기술하고 있어,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 다섯째, 「협약」 제33조 제3항은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감독 절차에 충분히 개입하고 참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장애인 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작성 및 검토 방향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심의 목적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 당사국 간의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를 통해 대상국가에 협약 이행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종견해와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의견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첫째, 협약 상 의무 이행의 실제 현황과 효과를 가감 없이 국가보고서에 설명하고 있는지의 여부, 둘째, 협약상 의무 이행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과 부족한 점을 기술하고, 향후 의무이행 계획을 국가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셋째, 가이드라인이 협약 조항별로 요구하고 있는 보고사항을 충실히 국가보고서에 기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4월 11일 시행된 이후, 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 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반복적인 진정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 장애인의 인권증진 및 보호 의무 이행에 있어서 법령·제도 미비 및 법령 간 상충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이 향후 시정되도록 위원회가 기존에 결정한 정책권고 및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을 바탕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정부에 제시할 수 있는 권고를 의견서에 제시하였다.

[2] 제4조 일반의무

1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현황 및 문제점**

○ 협약의 국내 발효(2009. 1. 10.)이후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와 장애인 단체의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협약 선택의정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판단기준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권리구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입 추진할 예정이라며 선택의정서 비준을 유보하고 있다.

□ **권고**

○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실효적 이행과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한 구제 및 조사권을 보장하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장애등급제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등록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인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판정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장애 등급을 부여해 등록·관리하는 제도로서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다.

○ 현행 장애인 정책은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 종류와 양을 일률적으로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장애의 다양성 및 당사자의 개별 욕구와 환경이 고려되지 않는 등 인권 측면에서 문제를 낳고 있다.

□ 권고

○ 의학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 및 환경, 욕구 등을 반영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제6조 장애여성

1 장애여성 교육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보고서는 “장애여성의 교육수준이 장애남성에 비해 낮다”고 기술하면서도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고, 장애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대안들은 정규교육(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기회가 아닌 사회적 교육기회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력이하(무학 포함) 장애여성 비율은 62.3%, 비장애여성은 22.3%, 장애남성은 31.9%, 비장애남성은 10.1%로 초등학교 학력 이하의 장애여성 비율이 비장애여성보다 약 3배, 장애남성보다는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장애여성은 5.9%, 비장애여성은 32.9%, 장애남성은 16.5%, 비장애남성은 46.3%로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장애여성 비율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약 6배, 장애남성 대비 약 3배 정도 낮았다. 또한 장애여성의 취업률은 22.7%로 전체 여성취업률 48.1%, 남성장애인 취업률 44.8%의 절반 수준 정도이다.

○ 「2012년 장애인백서」(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12.)는 장애여성의 교육기회 배제가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 후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으로 연결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권고

○ 정규교육 과정에서 장애남성 및 비장애여성에 비해 소외받는 장애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정규교육 과정에서 장애여성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장애여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며,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내용 다양화 등 장애여성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2 장애여성 모성권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

□ 현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여성의 경우 유산 경험은 35.0%이고, 유산 이유 중 남편 및 가족의 반대 7.8%, 본인의 장애 때문인 경우가 5.2%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1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장애여성은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임신출산 전문병원' 등의 모성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으나, 이를 지원할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무시나 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장애여성은 7.6%(83,517명)로 이중 2.1%(23,236명)는 빈번하게 폭력을 경험하였고, 가해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 순으로 나타났다.

○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2012년 상담현황」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관련 전체 상담건수 9,706건 중 성폭력은 7,359건(75.8%), 가정폭력은 764건(7.8%)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성폭력 실제피해 장애여성 1,046명 중 지적·발달장애인은 총 818명(78.2%)으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성폭력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을 당한 장애여성의 연령층은 14~19세가 264명(25.2%), 20~29세가 349명(33.4%)으로 14~29세 연령대의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58.6%를 차지하였다. 여성가족부가 2012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장애여성을 보호하는 시설은 부산, 광주, 충북 등 전국에 3곳으로, 3곳의 입소정원을 모두 합하면 4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

□ 권고

○ 비장애여성과 달리 장애여성은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특수한 경험과 정보가 필요하므로, 장애여성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정보 사이트 구축 및 장애여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성화된 병원 육성, 장애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여성의 모성권을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장애여성의 경우, 여성과 장애가 갖는 이중고로 인해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므로, 폭력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장애여성을 폭력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 피해 장애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4] 제8조 인식제고

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보고서에는 초·중·고등학생, 공무원, 근로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안내책자 배포, 공익광고 등을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2009년 실시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정도 인식조사」에서 조사대상자(비장애인)의 약 67%가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매우 많거나, 많은 편이라고 답하고 있으며, 49%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한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 실업자의 실업상태 지속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이 1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소속 직원 및 근로자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다. 또한 국가보고서에는 공무원이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교육 실시 통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2008. 4. 11.) 이후 2013년 말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고용영역 차별사건(총 413건) 중 145건(35.1%), 교육영역 차별사건(총 368건) 중 249건(67.7%), 장애인 괴롭힘 사건(총 842건) 중 104건(12.4%) 등이 공공기관을 피진정기관으로 하여 제기되었다. 이러한 통계를 감안해 볼 때, 향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권고

○ 공공기관 및 일반 회사, 각급 학교 등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실시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인식개선교육 미실시기관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과, 형식적 교육이 아닌 장애차별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 제9조 접근성

1 시설물 접근성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13년 말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총 6,540건의 사건 중 881건(13.5%)이 시설물 접근 관련 차별사건이며, 이 중 지체장애인은 614건(69.7%), 시각장애인은 137건(15.6%)으로 지체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상 시설물 접근에 있어서 가장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시설물 접근 관련 진정사건 881건 중 공공기관의 시설물 접근 관련 진정은 421건(47.8%)으로 민간 시설물에 비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더욱 보장해야 할 공공기관의 시설물이 여전히 장애인의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주관 「201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67.7%로 아직도 공공기관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이 접근성이 미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2007. 4. 10. 제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① 특히, 발달장애인에 관련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② 일정 규모(최소 300m^2) 이상의 시설물, 일정 직원(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의 권리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 ③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측면의 세부기준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2. 24. 제정, 이하 “편의증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2006.

1. 19. 제정, 이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등 과거에 제정된 기준을 따르고 있어, 그 동안의 사회·문화적 및 기술적 변화에 따른 현실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은 제10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제22조에서 편의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검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이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 권고

○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접근권에 대한 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일정 규모(최소 300m^2) 이하의 시설물 및 일정 직원(상시근로자 30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실질적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및 편의시설 세부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편의증진법 시행령」,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지속적·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증진법」 제10조에 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도·감독과 제22조의 편의시설설치 및 세부기준 적합성 여부 검사 규정에 관한 세부이행기준을 하위 법령에 마련해야 한다.

[6] 제11조 위기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비상사태

1 위기상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안전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보고서에는 고층건물에서 화재 및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체장애인이 피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화재 및 지진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방법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아 화재, 지진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위기 및 재난상황 시 모든 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중 응급조치, 구호, 구조 등에 해당하는 제37조(응급조치)와 제40조(대피명령)에는 장애인을 고려한 규정이 없다.

○ 국가보고서에는 범죄 및 교통사고 신고 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신고접수체계 미비에 대해 지적하지 않고 있으며, 실례로 112범죄신고 접수센터는 수화 및 필담 등을 이용한 영상통화 신고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민간 자동차보험회사의 경우, 사고신고 접수를 음성전화로만 받기 때문에 청각 및 언어장애인 등이 위기에 처한 경우, 신속히 사고접수가 되지 않아 장애인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 권고

○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

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고려한 응급조치 및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 청각, 언어, 발달장애인 등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수화 및 필담 등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한 의사소통수단으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112범죄신고센터나 민간 자동차보험회사 등 긴급상황을 접수하는 모든 영역에서 신고접수체계가 개선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7]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1 성년후견제

□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행위무능력자제도(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는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장애인의 법률상의 권리를 제한·박탈하여 이들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는 「민법」의 개정을 통해 행위무능력자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2013. 7. 1.부터 시행하였다.

○ 그러나, 여전히 후견 선고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어떤 자격이나 직무에의 접근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그 동안 본인이 종사해 왔던 직무와 관련된 자격을 획일적으로 제한·박탈하는 결격조항이 290여 개의 법령에 매우 다양한 내용으로 존재하는데, 이는 성년후견인제도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 후견심판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의사결정능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이고 의사결정 대상별로도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치료 등으로 상태가 호전될 수 있음에도 위 결격조항은 일률적으로 자격을 제한·박탈하고 이를 다시 회복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 권고

○ 성년후견제도가 장애인 의사결정을 조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 법률에 존재하는 획일적인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결격조항들을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맞는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8]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 정신장애인 입원 및 인권실태

□ 현황 및 문제점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2012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정신보건시설 입원자 총 80,569명 중 비자의 입원자는 61,128명으로 75.9%가 비자의 입원이었으며, 비자의 입원율이 20% 미만인 다른 선진국보다 강제 입원율이 높고(독일 17.7%, 영국 13.5%, 프랑스 12.5%), 평균 입원기간도 247일로 장기간이다.(영국 52일, 프랑스 35.7일, 독일 26.9일).

○ 위원회가 2008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의학적 요인에 따라 입원기간이 결정될 것이라는 일반상식과 달리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와 의료보장형태 등의 사회적 요인이 입원기간의 장기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전체 입원환자의 35.5%가 부적절한 입원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부적절한 장기 입원은 사회적응능력을 떨어뜨려 사회복귀를 어렵게 만들고 다시 장기입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 보호의무자에 따른 입원기간(중앙값) : 시군구청장 233일, 형제자매 202일, 부모 116일, 자녀 100일

- 의료보장형태에 따른 입원기간(중앙값) : 의료급여 1종[1] 221일, 의료급여 2종 153일, 의료보험 90일

□ 권고

○ 비자의 입원 방식 중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과 시장, 군수, 구

1) 의료급여 1종은「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등이 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타 수급자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임.

청장 등에 의한 입원을 일원화하고, 진단과 치료를 위한 입원을 구분하며, 계속입원심사 기간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정신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 입원 유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의 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입원기간 연장이 3회 이상인 경우 동일한 기초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가 아닌 광역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 경우 심사는 대면심사가 원칙이 되도록 「정신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9]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참여

1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활동지원 신청대상을 1~2급 등록장애인으로 제한함으로써,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3급 이하의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 2011년 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일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19만 8천명이나, 활동지원인이 필요한 장애인 중 29%만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외부(집 밖) 활동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27.8%로 나타나, 활동보조 인력의 부재가 장애인의 사회활동의 축소로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 2014년에 활동지원급여가 확대되어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쳐 한 달에 총 392시간, 하루 약 13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급여는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 인정점수대로 각각 점수대에 할당되어 있는 급여량을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급여를 못 받는 장애인과 필요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

□ **권고**

○ 장애등급 3급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바, 신청자격에서 장애등급 제한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관한 세부 항목(일상생활 수행능력, 사회활동 참여정도 등)으로 구성된 인정조사표에 따라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을 확대하여야 한다.

○ 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개별 욕구 및 필요에 부응하는 제도가 될 수 있으려면, 개별 장애인의 생활환경, 서비스 욕구, 사회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개인에게 필요한 급여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서비스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인별로 필요한 급여량을 가능한 구체적·세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인정조사표를 개발해야 한다.

2 장애인의 탈시설화

□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위원회가 839명의 시설거주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하게 될 경우, 가장 시급한 지원체계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주거지원’이 31.5%, ‘생활비 지원’이 22.5%, ‘고용 지원’이 13.0%, ‘활동보조인,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일상생활 지원인력’이 12.3%로 나타나, 주거에 대한 지원욕구가 가장 높았다.

○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영구임대주택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9%이며, 공공(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1.0%만이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세자금지원과 저소득층월세지원, 주택구입자금지원, 주택개조사업 역시 각각 전체 장애인의 0.9%, 3.8%, 1.6%, 0.5%만이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령」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대상을 3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전세주택, 매입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권고

○ 장애인이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기 위해, 시설보다는 지역사회의 일반 생활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계획 수립 및 단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해주거나 지역사회 정착 초기에 필요한 대안적 주거지원이나 고용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하여야 하며, 장애유형별, 거주형태별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현행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대상을 30년 이상 임대주택에서 장기전세주택, 매입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건설에 우선적으로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10]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1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 현황 및 문제점

○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년~2016년)」 통해 2016년까지 시내버스의 41.5%까지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2013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9월말 기준 전국 시내버스 총 33,225대 중 저상버스는 총 5,447대로 16.4%를 차지하며, 연도별 저상버스 도입은 매년 감소 추세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노선버스의 종류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가 있으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와 그에 따른 별표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할 대상 시설에서 마을버스를 제외하고 있어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에 미흡함이 있다.

○ 장애인에게 있어 버스 내 전자문자 및 음성안내는 버스의 현재 위치와 행선지를 알려주는 기본적인 정보제공의 수단이 되며, 이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볼 수 있으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일반버스에 설치된 전자문자는 31.5%, 방송음성안내는 79.2%로 설치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 2011년 기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기준 대비 충족률은 23.0%로 매우 낮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년~2016년)」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기준대수를 단계적으로 100% 보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나, 특별교통수단 확보는 지자체 예산의 투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자체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확대가 어렵다. 실제 강원도와 경남은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각각

48.0%와 50.3%인데 반해, 전남은 5.5%, 제주는 6.3%로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 권고

○ 모든 노선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와 그에 따른 별표를 개정하여 마을버스를 포함시켜야 한다.

○ 기존 교통수단에 대한 휠체어 승강설비 및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설비(음성안내방송, 문자안내판 등) 등 이동편의시설이 단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할 경우, 이용 대기시간이 길고, 예약이 어려워 장애인의 실제 이용실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교통수단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정기준 보급대수(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 맞춰 보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야 한다.

[11] 제21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

1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13년 말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관련 차별 진정사건은 각각 총 1,238건 및 831건으로 이 중 정보접근권 관련 진정은 503건(40.6%) 및 272건(32.7%)으로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장애 특성 상 정보접근권에 있어서 가장 많은 진정이 제기되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2009. 4. 11.부터, 그리고 법인(法人)은 2013. 4. 11.부터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원회에 접수된 정보접근권 관련 장애차별 진정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피진정기관으로 한 진정이 2009. 4. 11.부터 2014. 6. 30.까지 총 378건이 제기되었으며, 민간기관의 경우 2013. 4. 11부터 2014. 6. 30.까지 총 280건이 제기되었다.

○ 국가보고서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송 제작물 또는 서비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통역방송) 편성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011. 12. 26. 제정)을 통해 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를 연도별(2012년 ~ 2016년)로 제시하면서 최종 편성비율 목표치를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경우 자막 100%, 화면해설 10%, 수화통역 5%, 위성방송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 경우 자막 70%, 화면해설 5~7%, 수화통역 3~4%를 제시하고 있으나, 화면해설 및 수화통역 방송의 편성목표치는 매우 낮은 편이다.

□ 권고

○ 공공기관 및 법인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의 경우 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널리 홍보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각 방송사업자에게 당초 부여된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연도별 목표 달성여부를 계속적으로 관리, 점검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송 제작물 또는 서비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청각장애인의 수화 언어

□ 현황 및 문제점

○ 청각장애인은 제1언어인 수화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 우리 사회의 수화언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수화를 이용한 의사소통·정보이용·학습 등에 제약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청각장애인을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머물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2013년 위원회의 '장애인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청각장애 특수학교 재직교사 중 수화통역 자격 보유자가 5% 미만에 불과하고, 통합교육현장에서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6곳 밖에 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에게 수화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 위원회는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결정하여 피진정기관에 수화통역을 제공할 것을

2013. 4. 3. 권고한 바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수화를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들의 다양한 의사소통 형태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인정하는 과정으로, 2013년 하반기 3건의 수화기본법안이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위 법안들은 2014년 6월말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권고

○ 정보접근 관련 법령에 수화에 대한 규정을 명기하거나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수화언어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화언어의 발전과 교육·보급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12] 제24조 교육

1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라, 특수학교와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인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에 따라 교육책임자(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과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장애학생이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다.

○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13년 말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교육관련 장애차별사건(총 368건) 현황을 살펴보면, 이 중 '특수학급 설치거부'(19.6%)에 관한 사건비율이 가장 높았고, '수업·시험평가에 있어 정당한 편의 미제공'(16.3%), '전·입학 거부 및 제한'(15.5%),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제한'(11.1%),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9.0%), '장애학생 괴롭힘'(4.6%) 등의 순서로 접수율이 높았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사 배치 기준을 장애학생 4명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2013년 9월 발간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교육 담당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9년 5.4명, 2010년 5.2명, 2011년 5.2명, 2012년 5.1명, 2013년 5.0명으로 위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 특수학급당 학생 정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나, 2013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4월 현재 특수학교(중학교 과정)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전남 7.8명, 대전 7.2명, 서울 6.6명, 인천 6.5명이고, 특

수학교(고등학교 과정)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대전 8.8명, 전남 8.5명, 인천 8.2명, 서울 7.5명으로 법정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일반 고등학교의 특수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대구 8.2명, 제주 8.1명, 대전 7.8명, 부산 7.6 명 등 법정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도 지역별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고서에 제시된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현황(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0. 10.)에 따르면 전국 242개 조사대상 대학 중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도 전혀 설치되지 않은 대학이 총 111개로 약 46%에 이른다.

○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3년 장애아동 학대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아동 학대는 2012년 전체 아동학대 건수 6,403건 중 256건(4%)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아동 학대의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212건(82.8%), 친인척 27건(10.6%), 타인 16건(6.2%)으로 나타났다.

□ 권고

○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업·시험평가에 있어 장애특성을 감안한 정당한 편의 제공, 학교 내 시설물 접근성 제고, 수업 등 교내활동 참가 지원, 장애학생지원센터 미설치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등 통합된 교육환경 하에서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

○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 배치 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에 규정된 기준이 최소한 준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가 반영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장애아동 학대 및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애아동의 특성을 학대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13] 제25조 건강

1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사회에 소재한 동네 의원, 병원 등 진료기관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용화장실 등)이 잘 갖춰지지 않아, 중증장애인은 간단한 진료 및 처방을 받을 경우에도 편의시설이 갖춰진 원거리의 진료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

○ 보건복지부 주관 「201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60.5%이며, 의료시설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도 66.1%로, 의료기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 권고

○ 1, 2차 의료기관에 편의시설 구비 지원금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 보험가입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차별 진정사건이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2008. 1. ~ 2013. 12. 까지 총 331건에 달하고 있다.

○ 위원회는 2005년 8월 22일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원장, 국무총리에게 「상법」 제732조의 삭제, 「보험업법」 개정, 장애관련 공통계약심사 기준의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으며, 또한 2012. 11. 26.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의학적·통계적 연구에 대한 권고”를 한 바 있으나,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차별 사건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732조 규정을 개정하여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2015. 3. 12. 시행예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에서는 아직도 의사능력의 판단주체와 개념이 모호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협약 제25조 마호의 유보 역시 철회되지 않고 있으며, 보험과 장애에 관한 의학적·통계적 연구가 미비하여 여전히 보험가입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 권고

○ 협약 제25조 마호의 유보를 철회하고, 장애인의 사망률, 질병발생률, 재해발생률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마련하여 보험사들이 객관적 근거하에 장애인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고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사유로 장애인들이 보험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14] 제27조 노동과 고용

1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 현황 및 문제점

○ 「최저임금법」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2013. 10. 국정감사 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138개 사업장 중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53%인 73개이며, 특히,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않은 사업장이 15%인 21개에 이른다.

○ 주요 OECD국가들은 보호 고용된 중증장애인이 생산성 문제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보조하여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보조금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보완할 만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권고

○ 협약은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한 동등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협약당사국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사업장 현황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임금보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2 고용 상 장애인 차별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에게 일할 권리와 이를 통한 삶의 영위는 완전한 사회통합의 최상의 수준이자,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큰 의미를 지님에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한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3년 5월 기준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3%, 실업률은 5.9%, 고용률은 36.0%로, 같은 기간 대비 전체 인구의 실업률 3.0%에 비해 장애인의 실업률은 두 배 정도 높고, 전체 인구의 고용률 60.4%에 비해 장애인 고용률은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 현실에서 장애인이 심각하게 차별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고용'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13년 말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고용관련 장애차별사건은 총 413건으로, 이 중 '모집 및 채용'(38.7%), '퇴직 및 해고'(22.5%), '임금·복리·후생'(14.3%) 순으로 진정 접수 비율이 높았으며, 이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나누어 보면, 민간영역은 268건, 공공영역은 145건으로 고용분야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민간에 비해 접수건수는 낮으나,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 고용을 선도적으로 수행해야할 공공기관에서도 모집 및 채용 등 고용부문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 부분에서 차별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면접시험에서 장애응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 장애로 인해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로 전환배치, 승진에 있어 장애인 차별 등이 있었으며, 정부는 공무원인 중증장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근로지원인을 제공하지 않

는 사례도 있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월 172시간 한도에서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에서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준다.

□ 권고

○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며, 공공영역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근로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및 장애유형에 맞는 적합한 직종개발, 직장 내 장애인의 근로를 지원할 수 있는 근로지원인 확대 배치 등 장애인의 근로기회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1 부양의무자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다.

○ 장애인들의 경우, 성인이 되더라도 장애 및 사회적 장벽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쉽지 않아, 소득인정액 기준에서는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채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가족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자신의 주거형태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데에 가족의 의사가 크게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자기결정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 2011년 위원회가 실시한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심사 결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경우가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법상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고 일정부분의 재산 혹은 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 재산 또는 소득 기준이 상당히 낮아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 권고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장애당사자 개인의 상황을 근거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제29조 정치 및 공적생활 참여

1 장애인의 참정권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직 선거의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의무화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 및 수화통역 제공,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사용 등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책자형 선거공보에 담겨진 정보를 점자로 제작할 경우 더욱 많은 면수가 소요됨에도 이 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소는 총 3,508개소가 마련되었으나, 이 중 330개소만이 1층에 설치되었으며, 그 외 나머지 투표소 중에서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772곳,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곳은 38곳으로, 이 곳들의 접근성이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전투표소 중 약 70%가량은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또한, 선거구에 따라서는 한 곳도 1층에 투표소가 마련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14. 6. 30.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참정권 관련 진정사건은 총 147건으로, 투표소가 1층에 마련되지 않아 휠체어 사용자의 투표가 불가능한 사례, 사전 선거 시 점자용 투표용지가 미제공된 사례, 시각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용구 미제공으

로 동행한 가족이 대리투표한 사례, 공직선거후보자 홈페이지의 정보 접근성 미흡 사례 등 장애인 참정권 보장관련 진정이 매 번 선거 시마다 제기되고 있다.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소요되는 활동보조인의 경비는 피선거권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소요되는 활동보조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것은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 예비후보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권고

○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임의규정으로 된 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규정들을 강행규정화 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완화하며, 시각 및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의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거에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 않은 예비후보자와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제122조의2 제3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시설에서의 거소투표

□ 현황 및 문제점

○ 「공직선거법」은 병원이나 요양소에 기거하는 사람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장 또는 직원의 투표강요와 대리투표 등의 투표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한 장애인시설에서의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아직까지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투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 권고

○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등에서의 직원에 의한 투표강요 또는 대리투표 등으로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투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7] 제31조 통계와 자료수집

1 장애인 인권실태 통계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보고서에는 장애 관련 정책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기초자료로 각종 통계자료를 언급하고 있으나, 쟁점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 통계수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예컨대 국가보고서 68항에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는 장애인 수용자의 장애유형별 통계, 98항에는 지역방송, 유선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의 장애인을 위한 방송 편의제공 현황 통계, 113항에는 의무교육 실시 현황 및 장애영아의 취학 전 교육 수요 대비 공급현황 통계, 116항에는 전체 대학생 대비 장애인 대학생의 비율과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설치율에 관한 통계 등이 제시되지 않아 협약 이행에 관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 권고

○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 통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통계작성 시 장애인 관련 부분을 구분 생성(예시 : 장애유형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장애유형 별 질병발병률 및 재해발생률 등)하며, 장애정책 대상별(예시 : 장애학생, 장애여성,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등) 통계자료도 구분 생산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상황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8]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1 협약 모니터링 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 현황 및 문제점

○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소위 파리원칙(Paris Principle)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 업무수행의 독립성, 인적구성에 있어서의 독립성 및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는 협약 제33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구로서의 지위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는 2009년 4월 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21.4% 축소[2008년 208명 → 2009년 164명(44명 감축)] 하였으며, 2011년 10월에 장애차별조사과 신설 등을 이유로 일부 인력을 증원하여 2014년 6월말 현재 정원은 188명이 되었으나, 아직 조사관 인력이 부족하여 장애차별 진정사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및 협약의 국내적 이행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있어 제한이 따르고 있다.

□ 권고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통합,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로 인해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해 줘야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에 따라 장애차별 진정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고, 협약에 따라 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예산측면에서의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진정사건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관 인력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인력 충원 조치를 취해야 한다.